제340호 (2011. 12. 19)

■ 경제 동향
· 2011년 10월 국내 건설수주 44.6% 증가

■ 정책 · 경영
· 한-미 FTA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2)
· 건설업체에 대한 중복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정보 마당
· 독일과 영국의 학교시설 건립을 위한 부담금

■ 업계 · 연구원 소식

■ 경제 일지 / 제도 · 용어 해설

■ 건설 통계

■ 건설 논단 : 건설산업, 생존 위해 변해야 한다

10월 국내 건설수주 44.6% 증가

- 작년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 1~10월 누적 실적도 4.1% 증가 -

■ 10월 국내 건설수주, 기저 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44.6% 증가

- 10월 국내 건설수주는 8조 957억원으로 수주액 자체는 예년의 실적에 미치지 못했으나, 작년 10월 수주가 부진한 데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6% 증가
  - 공공 부문이 63.3% 증가했으며, 민간 부문도 36.1% 증가
  - 이는 작년 10월 수주가 5조 5,998억원에 불과한 데 따른 기저 효과 때문으로, 당시 공공과 민간은 각각 전년 동월비 66.2%, 38.6% 감소하였음.
  - 통상 10월 수주(2005~09년 10월 평균 수주액 9조 3,200억원)가 9조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예년의 실적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공공토목 · 주택수주 각각 115.0%, 344.5% 급등

- 10월 공공수주는 기저 효과로 토목과 주택수주가 높은 증가세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63.3% 증가한 2조 8,541억원을 기록함.
  - 공공 토목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15.0% 급등한 1조 8,584억원으로, 20005~09년 10월의 공공 토목수주 평균인 1조 9,654억원과 비교하면 예년 실적에는 다소 미치지 못함.
  - 한편, 공공 주택수주는 재정난으로 지연돼 왔던 LH공사의 발주가 속개되면서 344.5% 급등, 지난 8월(+146.6%)과 9월(+743.6%)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
  - 다만, 공공 비주택 건축수주는 34.2% 감소하여 부진했음.

<2011년 10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0. 10월	5,599.8	1,747.9	864.4	883.4	109.4	774.0	3,852.0	664.1	3,187.9	1,468.0	1,719.9
2011. 10월	8,095.7	2,854.1	1,858.4	995.7	486.3	509.4	5,241.7	762.0	4,479.7	2,912.9	1,566.8
증감률	44.6	63.3	115.0	12.7	344.5	-34.2	36.1	14.7	40.5	98.4	-8.9
2005~09년 10월 수주 평균	9,320.0	3,393.7	1,965.4	1,428.3	733.9	694.4	5,926.3	1,165.6	4,760.7	3,354.5	1,406.2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민간수주 전년 동월 대비 36.1% 증가

- 10월 민간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36.1%가 증가한 5조 2,417억원을 기록함.
  - 민간 토목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4.7% 증가함. 금액 자체로는 7,620억원으로, 올 6~9월까지 4개월 연속 1조원 이상 기록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부진한 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민간 주택수주 또한 작년 수주가 부진한 데 따른 영향으로 98.4%가 급등한 2조 9,129억원을 기록. 비록 2005~09년 간 10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광주와 부산 등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수주가 증가해 2조원 이상의 수주를 달성함.
  - 한편, 민간 비주택 건축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8.9% 감소해 부진하였음.

■ 1~10월 누적 수주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81조 6,462억원

- 올 1~10월 수주는 전년 동기비 4.1% 증가한 81조 6,462억원을 기록함. 2005~09년 10월 누적 수주 평균이 대략 84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예년보다 약 2조~3조원 정도 부진한 실적임.
  - 이는 공공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16.2% 감소한 때문으로, 공공수주는 4년 내 최저치인 25조 3,874원에 그침.
  - 한편, 민간수주는 56조 2,588억원으로 예년도 수준인 55.6조원 이상을 기록함. 이는 국내 플랜트 수주 증가와 오피스 건축물의 수요 증가로 민간 토목수주와 비주택 건축수주가 평년보다 각각 4조~5조원 정도 증가한 데 기인함.
  - 다만, 글로벌 재정 위기로 최근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향후 민간토목과 비주택 건축수주가 지속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011년 1~10월 건설 수주 현황>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0. 1~10월	78,405.1	30,311.1	20,357.4	9,953.7	3,595.0	6,358.7	48,094.1	9,371.7	38,722.4	21,128.4	17,593.9
2011. 1~10월	81,646.2	25,387.4	15,441.7	9,945.7	4,033.7	5,912.0	56,258.8	12,891.2	43,367.5	22,816.0	20,551.5
증감률	4.1	-16.2	-24.1	-0.1	12.2	-7.0	17.0	37.6	12.0	8.0	16.8
2005~09년 1~10월 수주 평균	84,056.7	28,428.6	18,600.0	9,828.6	4,563.5	5,265.2	55,628.0	8,794.1	46,833.9	30,247.4	16,586.5

자료 : 대한건설협회

박철한(연구원·igata99@cerik.re.kr)

한-미 FTA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2)*

- 사업 추진시 간접 수용 발생 여부 검토 필수적, 표준·인증·시험 기준 변화에 대비해야 -

■ 건설 관련 법정 임의 및 의무 인증제도 검토 필요

- 한-미 양국은 기술 장벽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간 시장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표준 판정 기준의 결정 및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제9.3조, 제9.4조), 시험 인증기관 지정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합의(제9.5조)
  -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이하 TBT)이란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기술 규정·표준·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적용하여 국가 간 교역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포괄 지칭
  - 향후 건설 관련 법정 임의 및 의무 인증 제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구체적으로는 안전 관련 인증, 품질 관련 인정, 신기술 관련 인증 등을 들 수 있음.

■ 사업 추진을 위한 법 적용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 문제 발생 여부 검토 필수적

- 한-미 FTA협정 제11장에는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 분쟁제도)를 포함하여 외국인 투자자 권리 보호, 투자 유치국 정부 의무와 예외 사항 등을 규정
  - 이에 규정된 협정상 의무는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NT)(제11.3조),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제11.4조), 최소 기준 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제11.5조), 수용 및 보상(제11.6조), 이행 요건(Performance Requirement) 부과 금지(제11.8조), 투자자 대 국가 간 분쟁 해결(ISD)(제11장 제2절) 등임.
  - 공공 질서 및 정부 권한 행사 서비스의 경우 투자 관련 유보 사항으로 남아 있음. 그러나, 공기업이나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위한 법 적용 시 수용 및 보상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경우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유보'

- 국경 간 서비스 거래(제12장)에 양 당사국에 4대 규정이 부여되어 있으나, 건설 및 엔

* 본고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한-미 FTA 내의 건설산업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지니어링 서비스의 경우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는 현재 유보함으로써 면허/등록 기준을 충족시켜야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WTO GATS(서비스 거래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Trade in Service)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서비스 공급의 형태* 중 Mode 3에 해당하는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하고 있음.

■ Mode 4인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 공급 추진

- 향후 원활한 한-미 양국 간의 서비스 공급을 위해 제12장에 규정된 4대 규정 이외의 규정으로 '전문직 상호 인정(Recognition)' 추진을 위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 전문직 상호 인정 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MRA)이란 전문 자격의 상호 인정 및 임시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현재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각 당사국의 전문직 자격 요건을 비교, 협상에 따른 조건 조정을 통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각 당사국의 전문직 자격을 인정, 자국의 면허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함.

■ 직접적인 건설시장 진입보다 유휴 자금 유입 및 엔지니어링/CM을 통한 영향력 행사 가능

- 국내 법/제도에 대한 숙지, 하도급 업체 계열화 문제 등 사업 운영상의 문제 내재로 실제 시공은 어려울 전망
  - 그러나, 미국 내 유휴 자금의 유입에 따라 투자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 대형 디자인 빌드, 턴키, 시공 책임형 사업관리(CM at Risk) 사업의 경우 국내 시공업체와 조인트벤처 또는 중장기적으로 대형 사업에의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국내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로의 진입은 상대적으로 클 듯

- 국내 공공시장에의 진입을 시도하는 미국 업체들의 빈도가 높아질 경우 국내 업 면허 기준 및 PQ 적용 기준 등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 WTO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가 공급되는 4가지 형태는 국경 간 공급(Mode 1), 해외 소비(Mode 2), 상업적 주재(Mode 1), 그리고 자연인의 이동(Mode 4)임.

건설업체에 대한 중복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처벌은 명백한 과잉 처벌, 제재 체계의 개선 필요 -

■ 건설업체에 대한 중복 처벌과 '이중 처벌' 판단 기준의 전환 필요

-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형벌로 처벌하고 다시 제재 처분 등이 내려지는 경우, 형벌보다 제재의 사회·경제적 처벌의 효력이 더 큰 '중복 처벌'이 이루어짐.
  - 예를 들어 건설업체의 '뇌물 공여'에 대해서는 「형법」의 징역·벌금형 처벌(개인), 「건설산업기본법」의 징역·벌금형 처벌과 행정 제재 처분(등록 말소 또는 영업 정지), 「국가계약법」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의 처벌이 중복 부과

- '이중 처벌'의 판단이 형식적인 처벌의 성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미흡하므로 '처벌의 실질적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즉, 제재 처분이 행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잉성'이 인정되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함.

■ 중복 처벌의 문제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공사, 물품, 사업 부문의 규모에 관계 없이 기업 전체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고 다른 공종의 공사를 성실히 수행했어도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가 금지됨.
  - 이러한 제재 처분의 획일성과 포괄성으로 인한 처벌의 '과잉성'으로 '이중 처벌'의 개연성이 매우 크고 평균 2.6개월의 제재로 평균 1,000억원 정도의 피해(매출액 기준) 발생
  - 또, 2006~09년 제재를 받은 종합건설업체 80개 사 가운데 70%에 달하는 56개 사가 폐업하고, 24개 사가 워크아웃되어 협력업체, 연관 산업, 근로자 등에 피해가 발생

- 제재 처분에 대해 해당 기업은 관행적으로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여 제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킴에 따라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공정한 경쟁의 저해 및 입찰 무산 등 공공 계약 이행상의 차질이 발생

- 또, 재재 사유에 행위의 성질, 정책 효과, 공공 계약 질서 위반 정도 등 다른 사유들이

*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이슈포커스 20호 : 건설업체에 대한 중복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포함되어 있어 제재 사유가 과다함.
- 제재의 시효가 없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기업 활동의 불안감 증대

■ 개선 방안

- 제재 사유 중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의 불공정 행위는 제재를 주된 처벌로, 뇌물 수수 및 입찰 담합 등은 해당 행정 형벌로 처벌하도록 처벌 체계를 개선
  - '입찰 담합', '뇌물 공여' 등은 「공정거래법」, 「건산법」 등에 근거하여 행정 형벌로만 처벌하거나 제재 처분에 갈음하는 다른 제재 수단을 통해 처벌

- 제재 효력의 대내·외적 범위 조정
  - 제재 대상 기업의 위반 정도가 낮은 경우, 대내적으로는 처분 대상 기업의 특정 영업, 특정 조직(부서) 또는 물량에 한정하여 제재하도록 개선 필요
  - 제재 사유를 공공 계약 질서의 위반 정도에 따라 필수적 제한 사유와 임의적 제한 사유로 구. 필수적 사유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임의적 사유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를 제한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업체 및 성실한 계약 이행 업체 등에 대해 제재 처분의 집행 효력을 유예하는 '유예 제도'의 도입, 제재 사유의 발생 후 5~7년이 경과(최대 10년)하면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제재 처분의 시효 제도' 도입 등의 검토 필요

■ 80여 개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명백한 '과잉 처벌'

- 최근 조달청 등이 저가 심사용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80여 개 대형 건설업체에 내린 제재 처분은 명백한 '과잉 처벌'임.
  - 조달청 스스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폐지한 상황에서 최초의 위반자에 대해서도 자진 시정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장기간의 제재 처분을 내렸기 때문임.
  - 경기도는 지난 11월 29일 동일한 행위에 대해 조달청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제출 관련 조항을 삭제한 점과 어려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를 면책
  - 조달청 등은 제재를 면책하거나 또는 유예 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과징금으로 제재하거나 제재의 대내외적 효력 범위를 조정하여 재처분하는 것이 필요

강운산(연구위원 · wskang@cerik.re.kr)

독일과 영국의 학교시설 건립을 위한 부담금

- 獨 : 공립학교 건립시 부담금 징수 불가, 英 : 학교시설 설치시 부담금 제도 시행치 않아 -

■ 독일 : 공립학교 건설 비용 지자체 부담이 원칙, 재원 부족시 은행 대출 등 이용

- 독일의 「연방건설법」 제12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충당을 위해 토지 등의 소유자인 개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
  - 기반시설부담금은 지자체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토지 취득,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해서는 징수가 가능하나 공립학교 시설의 건립과 증축 등을 위해서는 징수할 수 없음.
  - 독일 공립학교 시설의 건립 주체, 비용 부담 주체는 독일의 각 주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학교법」에 근거를 두고 지자체별로 개별법을 규정하여 운영

- 독일의 「학교법」은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공립학교 건립과 운영, 관리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로 '학교 관리자'*를 규정하여 학교의 건립·증축 업무를 시행**
  - 대부분의 '학교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학교법」은 새로운 공립학교의 건설이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하도록 규정
  - 공립학교의 건립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학교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 관리자'가 공립학교를 건립, 증축하는 업무는 상위 행정기관인 감독기관의 감독 및 통제를 받아 이루어짐.

- 공립학교의 건설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행되어도「학교법」에 의해 모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
  - 공립학교 시설의 건립, 증축 등의 모든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 의무 교육 무상 원칙 등 교육에 관한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
  -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공립학교의 건립과 증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요구된다고 해도 학교의 건립과 증축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

---

* 'Schulträger 또는 Schulträgerschaft'는 '학교 관리책임자 또는 법적 책임 기관'을 의미
** Bildung für Berlin-Schulgesetz für Berlin, Berlin City, 2010. 6. 참조.

■ 영국 : 학교시설의 신설과 증설은 지자체의 일반 재정으로 수행

- 2007년 10월, 의회에서 새로운 '계획 이익'이 부결되기까지 영국은 '계획 이익', '계획 협정' 등의 제도를 통해 개발 행위의 허가를 조건으로 개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등의 설치 의무를 부과
  - 새로운 계획 이익의 부결 후 현재는 '개발 사업 및 건축 행위 신청시에 납부하는 부담금(the Fees for Planning Applications in England)'*만 부과하고 있으며, 개발 이익의 환수보다는 개발 관련 행정 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
  - 특히, 개발 사업자에게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의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시설의 신설 및 증설은 지자체의 일반 재정으로 수행

- 현재 영국에서 부과되고 있는 '개발 사업 및 건축 행위 신청시에 납부하는 부담금' 중 주택과 건축물의 부담금은 다음과 같음.
  - 2007년 조사 때보다 주택의 경우 약식 신청서의 제출시에는 최대 £25,000에서 £125,000로 정식 신청서의 제출시에는 최대 £50,000에서 £250,000로 큰 폭으로 증가함.

<영국의 개발사업 및 건축허가 신청 부담금>

구분			기준	부담금
주택	신축의 경우	개략 신청서	2.5헥타 미만	0.1헥타당 £335
			2.5헥타 이상	최대 £125,000 / £8,285 + 2.5헥타 초과 0.1헥타당 £100
		정식 신청서	50가구 미만	가구당 £335
			50가구 이상	최대 £250,000 / £16,565 + 50가구 초과 가구당 £100
	개보수		1가구	£150
			2가구 이상	£295
	증축		-	한 가구 : £135 / 두 가구 이상 : £265
건축	주택, 농업, 온실 이외 건축		총면적 40㎡ 이하	£170
			40~75㎡	£335
			75~3,750㎡	75㎡당 £335
			3,750㎡ 이상	최대 £250,000 / £16,565 + 3,750㎡초과 75㎡당 £100
	농업용		총면적 465㎡ 이하	£70
			465~540㎡	£335
			540~4,215㎡	£335 + 540㎡초과 75㎡당 £335
			4,215㎡ 이상	최대 £250,000 / £16,565 + 4,215㎡초과 75㎡당 £100

주 : 주택, 건축 이외에 온실, 공장, 주차장, 쓰레기장, 석유 탐사 시설, 광산,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부담금 징수
자료 : London City, A Guide to the Fees for Planning Applications in England, 2010.

강운산(연구위원 · wskang@cerik.re.kr)

* 2011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2010년 2월 제정(A Guide the Fees for Planning Applications in England).

■ 대우건설, 말레이시아 저장시설 건설공사 수주

- 대우건설이 12월 7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 최고층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아이비타워 프로젝트를 1억 8,500만 달러에 수주
  - 아이비타워 프로젝트는 콸라룸푸르의 중심가인 빈자이 지구에 지하 4층~지상 58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공사로 공사 기간은 32개월임.

■ 현대건설, 환경 신기술 인증 획득

- 현대건설은 12월 13일, 현대엔지니어링, 인천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신기술을 개발해 환경부로부터 환경 신기술 인증을 획득
  - 현대건설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섭씨 50도 이상의 고온에서 발효시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바이오 가스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회수해 복합 액체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

■ KCC건설, KCC 김천공장 신축공사 수주

- KCC건설은 KCC 김천 사업단지 내 건축 자재 생산 공장 신축 공사를 1,687억원에 수주

■ 극동건설, 베트남 도로 공사 수주

- 극동건설이 12월 12일, 베트남에서 3,150만 달러 규모의 도로 및 교량 공사를 수주
  - 베트남 탱화시 인민위원회가 발주한 이번 탱화시 사회 경제 개발 사업은 8.08km의 도로와 교량 3개를 신축하는 공사로서, 공사 기간은 착공 후 24개월임.

■ 건설 단체 · 발주기관, '범국민적 절전운동' 동참

- 건설 단체와 주요 발주기관들이 12월 16일, 전력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10%의 에너지 절감을 약속하는 '겨울철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한 절전 실천 동참 결의 대회'를 개최
  - 이 날 결의대회에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3개 공공기관과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8개 단체가 참석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2. 13	국토해양부	▪ 건설경제과 주최, 건설산업 공생발전 분과위원회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건설산업의 공생발전분과의 논의 주제 선정 및 향후 논의 방향 토의
	국토해양부	▪ 주택정책과 주최, EWS 지표 점검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11월 주택시장의 주요 지표에 대한 점검
12. 14	시설안전공단	▪ 전문가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 참여 -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3차 기본계획 중간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자문 수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연구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주거 문화 진단 및 주택 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보고서 평가에 참여
12. 15	국토해양부	▪ 규제개혁담당관실 주최, 국토해양부 자체 규제 심사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 공업화 주택의 성능 및 생산 기준에 대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규제 심사
		▪ 주택건설공급과 주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참여 - 공동주택 하자 분쟁 상정 건 본위원회 심의
12. 16	경기도청	▪ 도시정책과 주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2020년 남양주 도시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승인의 건 등 심의

■ 연구원 발간물

유형	기관명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정책 평가 및 보완 방안	▪ 2010년부터 건설산업의 상생 및 동반 성장 제고를 위하여 시행된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은 행정안전부의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발주 전면 확대(지자체 공사 중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 2010년),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종합대책'(2011년 3월), 서울시 의회의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2011년 10월) 등임. ▪ 주요 건설 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의 시행으로 2011년 11월 현재 서울시 관내에서 발주된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가 발주 건수를 기준으로 2010년에 비하여 380%, 발주 금액 기준으로는 113%가 증가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하도급자와 노무자 및 자재·장비업자 등 하도급 불공정에 대한 전반적 개선보다는 원도급자 규제 중심의 규제 수단을 선택하고 2차 하도급 불공정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며, 상생 및 동반 성장과는 무관한 '하도급대금 직불'의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등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선택하였음. ▪ 따라서, 하도급대금직불제도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요건을 강화하고 원도급자가 임금·자재 대금·장비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무분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발주 요령」을 보완해야 함. ▪ 또한,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는 인건비, 기계, 장비, 자재비를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말고 직접 공사를 하는 인력, 기계업자, 장비업자, 자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제 일지

일자	주요 내용
12. 7	▪ 한국은행, 「2011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공개 - 2011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8% 성장 -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국내총생산(1.2%)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하여 전기 대비 1.0% 증가했고 실질 국민총소득은 전기 대비 0.8% 증가 - 총저축률은 최종 소비지출(1.6%)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1.1%)보다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기 대비 0.3%p 하락하였으며, 국내 총투자율은 28.8%로 전기 대비 0.7%p 하락 ▪ 기획재정부, 라오스 대형 수력발전사업에 EDCF 지원 양해 각서 체결 - 라오스와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 발전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개도국 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에 대한 최초의 EDCF 활용 정부 지원 사례로 기록 ▪ 지식경제부, 「제5차 한-미얀마 자원 협력위원회」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미얀마 해상 가스전 개발 협력, 광물 자원 공동 개발, 주석 광산 공동 개발 및 주석제련소 건설, 희귀금속 공동 탐사, 송배전 협력 등 양국 간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
12. 8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의 결정시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 기획재정부, 「제1차 한-탄자니아 이중 과세 방지 협약」 교섭 회담 개최 - 이번 회담에서 고정 사업장의 범위, 투자 소득(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제한 세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 입장을 확인 - 향후 양국의 경제 교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제2차 협상 시기를 결정하고 문안 합의를 추진할 계획임.
12. 9	▪ 한국은행, 「2011년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공개 - 2011년 1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 - 농림수산품은 채소가 내렸으나 축산물과 곡물이 올라 전월 대비 2.0% 상승, 공산품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5% 하락, 서비스는 금융·통신 및 전문 서비스가 내려 전월 대비 0.2% 하락 ▪ 지식경제부, 2011년 대한민국 기술 대상 및 10대 신기술 선정 발표 - 2010년 이후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 중 기술적 우수성 및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34개 기술에 대하여 대한민국 기술 대상을 수여
12. 12	▪ 지식경제부, 「무역 1조 달러 달성 기념 제48회 무역의 날」 행사 개최 - 건국 이후 한국 무역 60년사의 숨은 영웅과 향후 2조 달러 시대를 이끌어 갈 차세대 무역 일꾼 대표와 함께 소통의 시간을 마련 - 유공자 포상과 무역인을 격려하고, 무역 2조 달러를 향한 비전 제시
12. 13	▪ 한국은행, 「2011년 11월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 - 11월 수출 물가는 원화 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3% 하락(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 - 11월 수입 물가는 중간재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원화 가치도 상승하여 전월 대비 1.6% 하락(전년 동월 대비 11.8% 상승)

<장기계속계약제도>

- **개요 :** 임차 · 운송 · 보관 · 가스 ·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 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 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주로 사업의 규모 ·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일괄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활용되는 제도
  - 예산 확보 : 총 공사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 연도의 사업 규모를 해마다 새로이 설정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매년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게 됨.
- **입찰 및 계약 :** 총 공사 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총 공사 금액 부기)
- **입찰 및 계약 보증금 :** 총 공사 금액에 대하여 입찰 보증금은 100분의 5, 계약 보증금은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 계약 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환불
- **하자 보수 보증금 :** 연차 계약별로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보증금 납부. 다만, 연차 계약별로 하자 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 검사 후 납부
- **지체 상금 :** 연차 계약별로 당해 연차 계약 금액에 대하여 부과 · 징수
- **선금 :** 연차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의무적 선금률 등을 산정하여 지급
- **총 공사에 대한 권리 · 의무 :** 계약 상대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는 이상 입찰시 제시한 총공사 입찰 금액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 보유하게 되며, 발주기관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계약 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물가 변동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요건 산정시 물가 변동 적용 대가는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계약 금액 조정 청구 기간 :** 각 연차별로 준공 대가의 수령 전까지 허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예외 :** 계약 상대자가 계약 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더라도 당해 연차별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주요 거시경제 지표(2011. 11. 29~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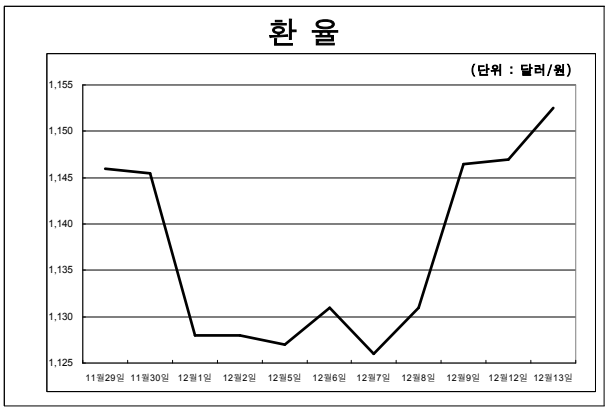

- 전주 대비 21.5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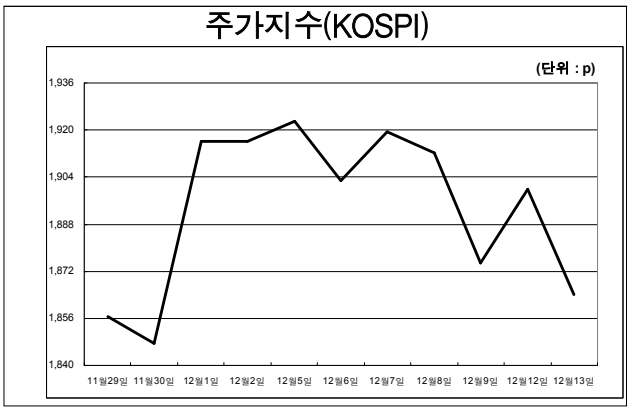

- 전주 대비 38.8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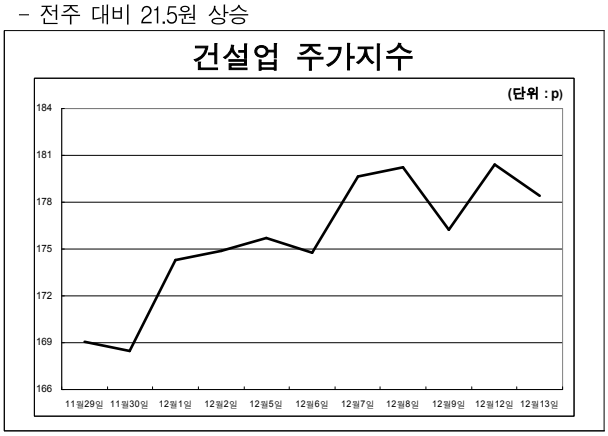

- 전주 대비 3.7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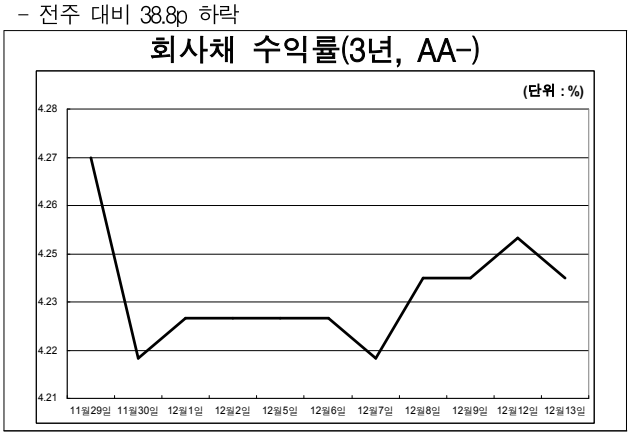

- 전주 대비 0.01%p 상승

■ 건설업체 수

(단위 : 개사)

구분	'07년 말	'08년 말	'09년 말	'10년 말	2011년					
					6월 말	7월 말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종합건설업체	12,842	12,590	12,321	11,956	11,806	11,796	11,759	11,739	11,716	11,647
부도업체수(누계)	120	130	87	86	30	31	33	39	44	51
전문건설업체	36,422	37,110	37,914	38,345	38,565	38,561	38,415	38,442	38,328	38,287
설비건설업체	5,478	5,768	5,994	6,151	6,321	6,334	6,348	6,347	6,342	6,342

자료 : 각 협회

■ 건설업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

구분	'07년 말	'08년 말	'09년 말	'10년 말	2011년					
					6월 말	7월 말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건설업	1,849	1,812	1,720	1,753	1,802	1,754	1,789	1,723	1821	1842
(비중)	7.9	7.7	7.3	7.4	7.3	7.1	7.3	7.1	7.4	7.5
제조업	4,014	3,963	3,836	4,028	4,135	4,079	4,031	4,014	4044	4054
(비중)	17.1	16.8	16.3	16.9	16.7	16.6	16.5	16.5	16.4	16.5
실업율	3.2	3.2	3.6	3.7	3.3	3.3	3.0	3.0	2.9	2.9

자료 : 통계청

건설산업, 생존 위해 변해야 한다

1800년대 초 세계 인구는 약 10억 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0.04%에 불과했다. 소위 '맬서스의 법칙'이 적용되는 가혹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구는 도시로 집중했고 기업들이 생겼다. 분업을 통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더 효율적이려고 분발했다. 종전의 1톤 생산비로 10톤을 만들었고, 10시간 걸리던 것을 1시간에 끝냈다. 기적이 시작되었다. 산업혁명은 기업이 있어 가능했다. 기업이 없었다면 증기기관이나 전기도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경제적 풍요는 정치적 평등을 가져왔고, 인구를 급증시켰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세계 인구는 70억이 아니라 10억대 초반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백미는 주식회사의 등장이다. 산업혁명으로 수송 수요가 늘면서 등짐과 수레로는 역부족이었다. 운하를 뚫고 철로를 부설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운하건설과 철로부설은 주식회사가 등장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불과 100년 전 구미의 주식회사는 건설회사가 대부분이었다. 나중에 이런 기반에서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제조업이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처럼 건설산업은 근대 경제 발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고, 주식회사의 발전을 선도하였다. 건설산업만큼 근대 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산업도 드물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도 건설산업의 역할은 비슷했다.

요즘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날로 싸늘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수주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금년 건설투자도 5% 이상 감소가 예상되며, 내년 역시 정체일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다.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전망이 많다. 이제 건설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제까지의 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절제와 공동체적 미덕이 강조되는 시대에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거래 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시대변화에 슬기롭게 적응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요즘 같은 시절일수록 중요하다. 또한, 기업 간 분배적 형평을 강조했던 정책이 허약한 다수를 양산했을 수 있다. 제도적 강제로 이상적인 상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 미덥지 못해도 기업이 스스로 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역시 정부에 대한 의타심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은 아직 춥고, 불편하고, 비싼 집에 살고 있다. 그들은 정전대란으로 불안에 떨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인프라를 원한다. 건설산업이 해야 할 일은 아직 많다. 공급자 중심적인 시각이 아닌 소비자 지향의 서비스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해야 한다. 거슬리는 비판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존을 위해 변해야 한다. **<건설경제, 2011. 11. 11>**

권오현(연구위원 · ohkwon@cerik.re.kr)